

안산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의안 번호	2432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3. 9. 12.
제출자 : 안산시장

□ 제안이유

- 체육진흥기금 존속기한(2013년 12월 31일)이 도래함.
- 법제처 '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'에 의거 조문을 정비함.

□ 주요내용

- 체육진흥기금 존속기한 연장 변경(안 제2조의2)

□ 개정조례안 : 별첨

□ 신·구조문대비표 : 별첨

□ 관계법령발췌서 : 별첨

□ 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없음

□ 예산수반사항 : 해당없음

□ 입법예고 결과 : 의견있음(별첨)

- 입법예고 : 2013. 8. 7. ~ 8. 27. (20일간)

□ 기타 참고사항 : 해당없음

안산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안산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안산시” 를 “안산시(이하 “시” 라 한다)” 으로 하며, “시장” 을 “안산시장(이하 “시장” 이라 한다)” 으로 하고, “의회” 를 “안산시의회(이하 “시의회” 라 한다)” 로 한다.

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의2(기금의 존속기한)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제3조제3항제3호 중 “기타” 를 “그 밖에” 로 한다.

제4조제2항제2호 중 “당해년도” 를 “해당연도” 라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2조의2의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·과		체육진흥과
입 안 자	실·과장 직위·성명	체육진흥과장 김 오 천
	담당·팀장 직위·성명	체육진흥담당 김 용 선
	담당자 성명·전화	최 광 소 (행정 2146)

신·구조문대비표